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

의 안 번 호	477
------------	-----

제출연월일 : 2001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안이유

- 21세기 대표적 신지식산업인 생물산업을 충청북도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충청북도 생물산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생물산업에 대한 중점육성분야를 정함 (제3조)
- 생물산업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사업추진, 산업단지조성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생물산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신기술 개발과제 도출·평가, 기술협력, 재단의 설립지원 등을 위하여 연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5조 내지 제11조)

- 충청북도 생물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 재단의 명칭은 “충청북도생물산업진흥재단”이라 하고 재단내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토록 함 (제13조)
-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금과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출연금으로 재산을 조성토록 하고 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제17조)

□ 의안전문 : 따로붙임

□ 관련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대표적 신지식산업인 생물산업을 충청북도의 중점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촉진하여 도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물산업이라함은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장 생물산업육성지원

제3조(육성분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가 생물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1. 생물의약산업
2. 생물화학산업
3. 바이오식품산업
4. 바이오환경·에너지산업
5. 생물소재·자원산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물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 보조, 출연 등 자금과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물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파제 공모사업
2.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지원등 벤처창업 육성
3. 생물산업관련 기업의 창업보육, 유치 및 육성, 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
4. 생물산업육성과 관련된 세미나, 교류협력, 홍보 등

제3장 연구단의 설치

제5조(연구단 설치) 생물산업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생물 산업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6조(기능) 연구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청북도생물산업 종합계획 및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2. 충청북도생물산업 관련 정책의 발굴, 자문, 기획 및 홍보
3. 신기술 연구개발과제의 도출·공모·평가·선정을 위한 자문
4. 산업체의 기술개발 자문, 기술협력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5. 생물산업 관련 벤처기업 창업지원, 기술자문 및 경영지도
6. 재단의 설립준비 및 지원 등

제7조(조직) ① 연구단은 대표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대표 연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단에는 연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분석팀과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생물의약,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에너지 생물소재·자원산업의 5개분과 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대표 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직무) ①연구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고 연구단 운영을 통합 한다.

②대표 연구위원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행정지원팀은 사업계획을 기획·수립하고 추진한다.

④5개 산업분과위원회는 해당 산업분야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안건 발생시 연구단장 또는 대표 연구위원이 소집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 ①연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장이 정한다.

②연구단은 사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지원)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주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법인의 설립 및 지원

제12조(법인설립) 생물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명칭 및 기구) ①법인의 명칭은 “충청북도생물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재단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충청북도내에 둔다.

제1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충청북도생물산업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2. 생물산업 과제의 발굴 및 산업화 추진
3. 생물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 유치 및 육성·지원 사업
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사업
5. 신기술 개발과제의 도출·공모·평가·선정 및 관리
6. 생물산업 관련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사업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등

제16조(재산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지원금
2. 충청북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출연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출연금

제1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구단은 재단이 설립되면 해산하고 연구단의 기능과 재산은 재단으로 흡수된다.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3조(정부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2. 농림수산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등 응용연구의 지원과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발전
3. 산업자원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 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 기술 개발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 의료, 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관련연구의 지원
5.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유전자의 이용 및 보건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생명공학지원체제의 육성
6. 환경부장관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지원